

■ 패널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방송사, 반론보도로 합의

A방송사는 인터넷신문 기자인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악플러들에게 고소를 남발하여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패널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신공격 및 성적지향(性的指向)을 비하하는 게시글이 80만 건에 이르러 고소하게 된 것이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난글을 먼저 유도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반론·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측은 해당 보도는 신청인의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지 신청인이 고소남발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이 고소남발한 것처럼 파악된다고 지적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자를 설득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반론보도문이 해당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 검찰 수사 중인 사안 일방적 보도, 반론보도문 게재

B신문은 신청인인 지역방송사가 이미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옥 건너편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고 결국 거액의 협찬 계약을 맺었는데, 그 중 일부를 신청인 방송사 사장 및 간부가 착복했다는 의혹을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의혹은 신청인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된 직원의 악의적인 제보에 따른 보도로, 현재 보도내용에 관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인데도 신청인에게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보도 당시 의혹 수준에 불과한 사안을 수차례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반론이 미흡하게 반영되어 신청인의 반론보도가 게재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 확정이 불가능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B신문의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이 각 게재됐다.

■ 블랙박스 영상 속 신원 노출 방송사, 손해배상

C방송사는 아침 뉴스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들로 구성된 코너를 방송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주차한 차량이 저절로 도랑으로 빠지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지인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조정대상보도 영상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인을 '김여사' 등으로 조롱한 댓글이 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블랙박스에 담긴 신청인의 모습이 불분명해 신원을 알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방송 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배상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과오를 인정했으며, 신청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심리 참석을 위해 수고를 들인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1백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맛집'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D방송사는 음식·식당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기로 유명한 모 프로그램에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일부 소고기 정육식당에서 용량·등급 등을 허위로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 방송을 홍보하기 위한 예고편을 2회에 걸쳐 방송했는데, 이 예고편에는 방송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식당의 내부 전경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1초 이하의 순간으로 노출됐다.

이에 대해 신청인 식당은 맛집으로 유명해 그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모자이크된 내부 전경만으로도 특정되었고, 실제 방송은 순간이었으나 대중들이 많이 검색하는 포털사이트 게시판·블로그 등에 이를 캡처한 장면과 신청인 식당 상호가 댓글 등으로 게재됨으로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